

울산광역시 복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24 호 2022. 1. 6.(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29호[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30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10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31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32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26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33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2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34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35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36호[울산광역시 복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37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45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38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58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39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68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40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70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41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42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43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44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96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45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00

훈 령

- 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284호[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152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324호[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5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5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허가) 고시] 156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5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5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호[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15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0호[공고] 15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9호[2022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공고] 16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0호[2022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16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2호[2022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16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4호[2022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 16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5호[2022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표] 167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229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

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 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기준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정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제1항 단서 중 “수탁기관”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및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
- ⑧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4(수탁기관 선정 공고) 위탁기관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재위탁의 금지)”를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성과평가) ①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의 지휘·감독 결과, 제14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명확화, 사후 관리 강화,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재위탁”, “재계약” 용어의 정의(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준 마련(제4조의2 신설)
- 의회 동의안 등 내용 구체화(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제4조의5 신설)

라.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수탁기관 선정기준 명확화(제5조)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사전 공개 규정(제6조제2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제7조제4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제7조의2 ~ 제7조의4 신설)

마.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제16조 신설)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제17조 신설)

바. 수탁기관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관련 사항 규정(제4조의5제2항제7호)
-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규정(제5조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3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포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와 각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게시판, 구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정
조례의 [] 개정 청구서
[] 폐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_____)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신청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input type="checkbox"/>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울산광역시 북구 ○○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정의(제1조)
- 나.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청구권자의 수(제2조, 제3조)
- 다. 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위임신고서(제4조 ~ 제6조)
- 라.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보정기간 등(제7조 ~ 제11조)
- 마. 사무협조(제1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3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 사무기구”로,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정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

로,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을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안”을 “위원회의 의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이외”를 “사무 이외”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1조)
- 나.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
- 다.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조문 신설(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
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3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
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내
- 3. 복지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구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제1조)
- 나.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와 그 소관(제2조, 제3조)
- 다.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 선출 등(제4조 ~ 제6조)
- 라. 특별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선출 등(제7조, 제8조)
- 마. 위원의 선임,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제9조 ~ 제11조)
- 바.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2조)
- 사.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회의 규칙」 준용(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3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총일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

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제출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제출 안건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6조(회의 운영)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 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제1조)
- 나. 회의 총일수, 회기, 집회일 등(제2조 ~ 제4조)
- 다. 의안 제출 관련(제5조)
- 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운영(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3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조항 변경(제1조,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3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를 “울산광역시”로, “관한”을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로, “작성하고”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로, “의하여야 한다”를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조사특별위원회”를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로, “구성한다”를 “확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7조와 제120조”를 “법 제131조와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7조 중 “이의”를 “이름”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 또는”을 “법령이나”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를 “경우 외에는 그 요구”로, “본회의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를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를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아니할 때”를 “아니할 경우”로, “거부할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및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 조에서는 “의장등”을 ““위원장””으로, “의장등은”을 “의장이나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장등”을 “의장이나 위원장”으로, “서명날인(署名捺印)하게”를 “서명 또는 날인하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못할 때”를 “못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서서에 의하여야”를 “선서문에 따라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따르지”를 “응하지”로, “본회의등”을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할 때에는”을 “요구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실제 비용을”을 “실비를”로 한다.

제12조 중 “본회의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본회의등”을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있을 때에는”을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등은”을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으로, “중지하게 하고”를 “중지시키고”로, “조사하도록”을 “조사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을 “대하여 해당”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정하여 본회의등”을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본회의에서 직접 행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되, 감사”를 “감사”로,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을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로, “지체 없이 제출”을 “제출”로 한다.

제18조 중 “제척사유”를 “제척과 회피사유”로 한다.

별지 서식의 본문 중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조항 변경 및 조문 정비(제1조, 제5조, 제6조, 제11조)
- 나.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 제3조, 제9조, 제16조)
- 다. 기타 조문정비(제7조, 제10조, 제12조 ~ 제14조, 제1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36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제3항”을 “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64조”를 “제7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를 “별지 서식의 위촉장
을 교부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요청받았을 때에는”을 “요청받은 경우”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제출할 때에는”을 “제출하는 경우”로, “날인(捺印)”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3조 중 “때”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등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조항 변경 및 조문 정비(제1조, 제3조, 제10조)

나. 기타 조문정비(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3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11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휴가

제12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이상 1년미만	11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6년이상	21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미만	5일	4년이상	10일
1년이상 2년미만	6일		
2년이상 3년미만	7일		
3년이상 4년미만	8일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을 때

-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의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5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훈련소 입소·퇴소 당일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의장은 재난·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노고가 인정되거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6.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7. 의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8. 성희롱·성폭력, 특이(악성·고질)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해 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의회의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량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사항(제6조)
- 다.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제11조)
- 라. 휴가에 관한 사항(제12조 ~ 제1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3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현금 1천원의 맞춤형 복지비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6.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월할 계산”이란 해당 연도의 복지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진출·전입, 휴직, 복직, 퇴직(면직, 해임, 파면을 포함한다) 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한다. 다만, 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육아휴직·질병휴직·가사휴직·노동조합전임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 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 3. 직위해제·정직 중인 공무원. 다만, 그 처분기간에 한한다.
 - 4. 의장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배제하기로 정한 사람
- ③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구내식당, 휴게시설, 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
- 2.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시설
-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 4.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 5.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모범·친절·적극행정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시찰
4. 생일·결혼·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및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급
5. 공무원 및 가족의 현장체험프로그램 지원
6. 건강검진비(심리상담·치료비를 포함한다) 및 직원 단체보험 지원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지정한 기간에 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0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개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제외한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항목(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 구매항목(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항목(성형 등)
4.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
5. 그 밖에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항목

②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점수의 일부를 전통시장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의 합으로 하며,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부여하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1.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2.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른다.

⑤ 제3항제2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지급범위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⑥ 개인별 복지점수 산정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 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⑦ 복지점수의 세부지급기준은 매년 의장이 정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고, 전입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④ 직위해제·면직·해임·과면·정직·휴직·과건·전출·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1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⑥ 신분변동일 기준 미사용 복지점수는 소진시키고, 과사용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한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복지점수의 비용지급은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의 처리 방식에 따라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용카드사에 입금 조치한다.

③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 불가능한 방법으로 복지점수를 사용한 경우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신청하고, 그 비용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④ 의장은 매월 단위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복지점수 비용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 ①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운영사항)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제도운영 및 유지관리

제1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렬·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6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 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등에 관한 사항(제4조 ~ 제6조)
-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 ~ 제15조)
- 마.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제16조 ~ 제19조)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제20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응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3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 1. 13.시행)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제2조, 제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

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 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등 용어에 관한 정의(제2조)

나.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그 범위, 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제5조 ~ 제7조)

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8조)

라. 전문기관 경비 지급 및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 1. 13. 시행)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조문 변경(제1조, 제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로, “규격·등록관리,”를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추어 사용한다.

제3조의 제목 “(특수 공인)”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② 직인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인영의 내용)”을“(규격 및 인영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의 제목“(규격)”을“(재료 및 인영의 색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를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 인 의 규 격 (제 4 조 관 련)

구 분		길 이
청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인	3.6cm
직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인	2.4cm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	2.1cm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장인	2.1cm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인 영)	등록일	년 월 일	
		새긴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사유		
		공보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input type="checkbox"/> 폐기	(인 영)	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방법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자	소속 : 직급 : 성명 :	
		공보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사 유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관리부서	
		비 고	
<input type="checkbox"/>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 고 공 인 명	
2.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의회 운영 법규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인의 종류와 사용 및 인영의 내용, 색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 및 추가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 법령 추가(제1조)
- 나. 공인의 종류 수정(제2조)
- 다. 공인의 사용에 관한 별도의 조항 신설(제3조)
- 라.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에 관한 조항 신설(제4조)
- 마.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에 관한 조항 신설(제5조)
- 바. 공인의 사고보고 등에 관한 조항 신설(제1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응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를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한다)운영”을 “한다) 운영”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북구의회 의장”을 “북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제1호 중 “복구”를 “의회”로 한다.

제11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수상자 명부”를 “포상대장”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분실, 파손 등의 이유로 표창장 등을 재교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하단 내용 중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표 안의 “담당 업무내용”을 “수공기간”으로 하며 결재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수상자명부”를 “포상대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기 념 패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직인

(의원 일동)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심 의 조 서

공 적 심 의	소속(주소)	직 위	성 명	수공기간
요 구 자				
인 적 사 항				
의 결 주 문				
이 유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인 사 위 원 회

직 위	성 명	가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성 명 :

- ◆ 소속(주소) :
- ◆ 직위(직급) :
- ◆ 생년월일 :
- ◆ 포상종류 :
- ◆ 포상번호 :
- ◆ 수여일 :
- ◆ 공적요지 :

위와 같이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포상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각종 포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포상의 취소, 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포상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위임근거 명시(제1조)
- 나.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제4조)
- 다. 기념패 수여 대상자 변경(제8조)
- 라.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 신설)
- 마. 공적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변경(제12조)
- 바. 포상의 취소 및 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제16조, 제17조 신설)
-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 비율은 2배로 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 1. 13.시행)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제1조)
- 나.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제2조)
- 다.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라.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제5조)
- 마.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①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

관 등의 자료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구,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구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②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징계 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위반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12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장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구 및 구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구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23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2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절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2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를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검칙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8조제5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3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의회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3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

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 받은 사람,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3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

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회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41조(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5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소속 직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실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46조(자문료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8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윤리강령(제4조제1항 관련)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 기초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며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1.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1. 공직자로서 모든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별표 2]

윤리실천규범(제4조제2항 관련)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3]

징 계 기 준(제11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가. 축의금, 조의금 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5만원 10만원
3. 선물 가.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	5만원 10만원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8조제1항 관련)

1. 의원 사례금 상한액

가. 의원별 상한액: 4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 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 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 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					
				무	-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 일	사 업 자 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지분 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제4항 관련)

의 견 서

성 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12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 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서식] (제26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청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제27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제28조제2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20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시 분 ~ 시 분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제28조제6항, 제35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및	받은일시	
처리내역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제30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 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	----	--------	-----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	------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원인
-------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 금액
-------	-------

대상	거래 금액
----	-------

거래원인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제35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 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35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시행)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20. 5. 27.시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기 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개 정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나.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제28조제2항)

다. 신고 변경사항은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5일내 보완(제28조제3항)

라.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제28조제4항)

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 의무사항 변경(제34조제3항)

바. 기타 조문 정비 등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20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과 상호협의를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제정·시행(2022. 1. 13.)함에 따라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폐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324호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 “붙임 별책”

- 가.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나. 건축물(오피스텔 외)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다. 적용지수(구조지수의 적용, 용도지수의 적용, 위치지수의 적용)
- 라. 경과연수별 잔가율
- 마. 가감산특례
- 바.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사.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아.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붙임 별책”

- 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 부수시설물, 입목,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승마회원권·요트회원권), 지하자원
- 나. 어업권 기준가격(복구) (단위:천원)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단위	기준가격
종별	유형별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4,350
정치망	-	-	-	1ha	7,56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	1ha	8,050

※ 붙임별책 :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조사, 산정 업무요령”은 복구 부과담당관 (☎ 052-241-7541)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1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현대자동차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700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양정동 288-2번지	하천의 명칭	○ 명촌천
점용 내용	○ 공작물의 신축	점용 면적	○ 일시 : 131.0m ² ○ 계속 : 14.0m ²
점용 기간	○ 일시: 2022. 1. 1. ~ 2022. 6. 30. ○ 계속: 2022. 7. 1. ~ 2026.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1. 3.
2. 점용·사용의 목적 : 천곡천 일원 습터 조성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천곡동 1056-40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34m²
 - 나. 기 간: 2022. 1. 3. ~ 2026.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복구청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4, 소로3-186호선, 소로3-187호선)사업
나. 명 칭: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창평동 1171-4번지 일원(변경없음)

3. 사업규모(면적변경)

┌ 당 초 : 도로개설 L = 238m, B=4~6m, A= 1,432m²

└ 변 경 : 도로개설 L = 238m, B=4~6m, A= 1,470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2020. 6. 11. ~ 2025. 6.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참조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 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설과(☎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9호

울산광역시 복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울산광역시 복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복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상점가명 : 아진상가 골목형상점가, 코끼리종합시장 골목형상점가
2. 지정구역

등록번호	골목형상점가명 (상인회명)	업 무 구 역
제2022-1호	아진상가 골목형상점가 (아진상가상인회)	천곡동 410-6, 410-15, 410-19, 410-22, 410-23
제2022-2호	코끼리종합시장 골목형상점가 (코끼리종합시장상인회)	신천동 318-7, 312-2, 321-1

3. 지정일자 : 2022년 1월 3일

※ 기타 문의사항은 복구 경제일자리담당관(052-241-7702)로 문의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10호


공 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등록 공인 내역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인영	비고
울산광역시복구 구립도서관장인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신설	2022. 1. 3.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19호

2022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의2에 의거하여 정기예방접종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장

- 대 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2009.1.1. 이후 출생아)
- 내 용 :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무료접종 가능 (*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접종 중단 상태임.)
-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일정

대상전염병(백신)	접종횟수	접종시기
결핵(BCG 피내용)	1	생후 1개월 이내
B형간염	3	생후 0, 1, 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	생후 2, 4, 6, 15~18개월, 만 4~6세
소아마비(폴리오)	4	생후 2, 4, 6개월, 만 4~6세
DTaP-IPV 혼합백신	4	생후 2, 4, 6개월, 만 4~6세
DTaP-IPV/Hib 혼합백신	3	생후 2, 4, 6개월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4	생후 2, 4, 6개월, 12~15개월
소아 폐렴구균	4	생후 2, 4, 6개월, 12~15개월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	생후 12~15개월, 만 4~6세
수두	1	생후 12~15개월
A형 간염	2	생후 12~36개월(2회)
일본뇌염(사백신)	5	생후 12~36개월(3회), 만 6세, 만 12세
일본뇌염(생백신)	2	생후 12~23개월, 24~35개월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 HPV	2	만 12세 여아, 1차 접종 후 6개월 뒤
파상풍/디프테리아(Td) 또는 Tdap	1	만 11~12세
인플루엔자 *	1	생후 6개월 ~ 만 12세 (첫 접종시기 따라 횟수 다름)

*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앱 : 위탁의료기관 및 접종내역 확인 가능

* 인플루엔자는 계절 접종으로 매년 9~10월 중 실시하며 세부사항(접종대상 및 시기)은 추후 공고 예정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방법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

문 의 : 복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052-241-8246~7)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0호

2022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장

※ 위탁의료기관마다 접종 가능한 백신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 필수

※ 위탁의료기관 백신 인터넷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hip.kdca.go.kr>)> 지정의료기관찾기

	병의원명	전화번호	주 소	
1	구암의원	287-7 246	염포로 633	영남권
2	함께하는의원	289-7 046	염포로 673	
3	윤가정의학과의원	287-2 300	염포로 529, 303호	영남권
4	하나정형외과의원	287-9 852	염포로 521	
5	한소아청소년과의원	288-0 075	염포로 601, (현대자동차회관) 2층	
6	이기호내과의원	287-6 187	염포로 599	
7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287-4 287	화봉로 67, 4층	화북권
8	김유홍내과의원	288-9 693	화봉로 67, 2층	
9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89-2 075	화봉로 75	
10	홍찬의소아청소년과의원	281-0 756	화산6길 8, (스타워) 3층	
11	울산시티병원	280-9 068	산업로 1007	영남권
12	김현경의원	287-0 314	화봉로 60, 206호	
13	현대연합의원	291-9 800	상방로 106, 2층	

14	김은정소아과의원	288-5 510	명촌15길 10, (평창리비에르3차상가) 201호	평창리내
15	행복한내과의원	283-2 299	명촌로 85, (평창리비에르2차상가) 301동 206호	
16	이내과의원	289-1 066	명촌로 85, (평창리비에르2차상가)	
17	세나산부인과의원	285-3 800	호계로 281	호계내
18	하나산부인과의원	282-8 258	호계로 292	
19	울산엘리아병원	290-2 100	호계로 285	
20	365호계내과의원	295-1 190	호계로 272	
21	이순일내과의원	282-7 588	호계2길 7, 3층	
22	김환곤내과의원	295-6 996	호계로 292, 2층	
23	탑이비인후과의원	249-7 582	박상진12로 11, 지오타워 503~504호	송정내
24	몸바른의원	222-7 575	박상진13로 3, 3층	
25	송정연세의원	289-1 111	박상진13로 20, 이니트타워 4~5층	
26	에스뜸의원	297-5 115	박상진12로 11, 지오타워 305~307호	
27	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251-3 336	박상진12로 11, 지오타워 4층 403~405호	
28	복음요양병원	268-7 000	제내1길 6	시천내
29	열린이비인후과의원	291-2 975	호계로 322	
30	엠디한방병원	286-3 355	호계로 332-1 현대하이플러스 2,4층	
31	한빛이비인후과의원	286-7 613	제내1길 2, 필그린상가 307호	
32	호계연합내과진단방사선과의원	286-7 585	호계로 326	
33	울산아동병원	282-7 171	호계로 332-1	
34	다정의원	282-0 127	매곡1로 15, 2층	매곡내
35	드림아이의원	295-0 129	호계매곡1로 31, (에일린의뜰1차상가동) 105호	
36	봄소아청소년과의원	286-1 311	매곡1로 15, 2층	
37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281-1 231	매곡로 115, 202호	
38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977-1 000	매산로 15, (참조은빌딩) 3층	

39	아이마음아동병원	716-5 170	괴정1길 114, 3, 4, 5층	
40	웰당이진우내과의원	292-7 179	매곡1로 46, (대우프라자) 208호	
41	김영근의원	282-3 770	이화5길 10	중산동
42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268-6 575	화산중앙로 84, 2층	
43	조윤성내과의원	293-7 171	신답로 48, 프리지아 3층 6호	상암동
44	좋은아이병원	700-7 007	아진로 31, 5~8층	
45	코끼리이비인후과	294-8 275	아진로 76, (맑은샘빌딩) 201호	
46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 의원	294-7 504	달천로 9, 202호	천곡동
47	민사랑내과의원	292-1 111	아진로 102, (그린상가) 201호	
48	새현대의원	291-3 770	천곡길 169, 106동 201호	
49	연희가정의학과의원	295-0 800	천곡남로 33, (삼성코아루상가) 203~204호	
50	영남이비인후과의원	286-8 277	가재길 87, 3층	
51	강동오션키즈의원	258-1 004	산하중앙2로 150	산하동
52	한결의원	268-8 227	산하중앙2로 290, (아이스케어) 305~306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2호

2022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 (총수의 1/20)
계	내국인	외국인	
173,117	172,823	294	8,656

- ※ 내 국 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복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
- ※ 외 국 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복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
-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4호

2022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구청장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 고
북 구	173,048	25,958		
구 청 장	농소1동	28,764	1,731	
	농소2동	31,811	1,731	
	농소3동	29,215	1,731	
	강동동	12,498	1,731	
	효문동	25,031	1,731	
	송정동	28,706	1,731	
	양정동	8,505	1,276	
	염포동	8,518	1,278	

○ 구의원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구 의 원	가선거구	69,968	13,994		
	동 별	농소1동	28,764		700
		강동동	12,498		700
		송정동	28,706		700
	나선거구	61,026	12,026		
	동 별	농소2동	31,811		611
		농소3동	29,215		611
	다선거구	42,054	8,411		
	동 별	효문동	25,031		421
		양정동	8,505		421
염포동		8,518		421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우리 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산정

※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1. 구청장 :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
2. 구의원 :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5호

2022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단위 : 명)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연서주민수	비 고
계	내국인(19세 이상)	외국인(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40이상	2022. 1. 12.까지
173,048	172,823	225	4,327	
계	내국인(18세 이상)	외국인(18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	2022. 1. 13.부터
175,252	175,027	225	2,504	

【 2022. 1. 12.까지 적용 】

- ※ 내 국 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복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 외 국 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복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중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 ※ 연서주민수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40

【 2022. 1. 13.부터 적용 】

- ※ 내 국 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복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 ※ 외 국 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중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
- ※ 연서주민수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70